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제2485호
- 다. 제출일자: 2025.2.25.
- 라. 회부일자: 2025.2.25.

2. 제 안 사 유

- 가. 한강버스 운영 관련 협약 체결('23.12.28, 서울시-(주)이크루즈) 이후, 사업자 및 사업계획 변경,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협약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
- 나. 기존 협약('23.12.28) 내용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 ((주)이크루즈, (주)한강버스-변경예정자)와 협의 통해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 친화적 선박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업무협약)에 따라 변경 협약(안)을 마련하였음.
- 다. 본 협약(안)에는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협약변경 개요
 - 협약명: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 협약
 - 당사자: 미래한강본부장 - (주)한강버스 대표
 - 목 적: 당초 협약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사업자 변경 등 반영

나. 추진경위

- '23.11.30.: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SH 참여 방안 마련
 - SH(운영·회계 등, 51%)와 (주)이크루즈(선박 운항 등, 49%) 합작
- '23.12.22.: 한강버스 운영 관련 협약 시의회 동의
- '23.12.28.: 협약 체결(서울시- (주)이크루즈)
- '23.12.29.: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24. 6.26.: (주)한강버스 법인 설립(SH 51%, (주)이크루즈 49%)

다. 주요 변경내용

- 사업명 및 사업자 변경
 - (사업명) 시민공모 결과 '한강 리버버스' → '한강버스'
 - (사업자) 공공성 강화 위해 '(주)이크루즈' → '(주)한강버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3·4·8·9·10조)
 - 협약체결 이후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선박·운항노선·시간·요금 등의 변경 사항 반영
 - 도선장 내 전기충전시설, 시범운항 실시 사항 등 반영
- 재정지원 절차 조정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강화(안 제7·13조)
 -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절차 조정
 - 사업 운영계획 실효성 강화 및 방만 운영 시 보조금 감액 조항 추가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운항결손액 산정기준 정비(제3조, 제13조 등)
 - 운항결손액=운항사업 지출금-운항사업 수입금-부대사업 수입
 - 추가 사업시설 반영 및 사업자 동기부여를 위한 운항사업 지출금 항목 보완
- 기타 조례제정 사항 반영 및 협약효력 조항 정비(안 제26조 등)
 - (조례 제정) 협약체결 이후 관련 조례 제정으로 협약서 내 관련 근거 등 조례 내용 반영
 - (협약 효력) 기존 협약과 변경 협약의 효력 규정(안 제26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등에 관한 의결 조례」 등

나. 예산조치: 2027년 예산 반영 필요(비용추계서 첨부)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협약 변경 동의안은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한 협약체결('23.12.28, 서울시-(주)이크루즈) 이후, 사업명, 사업자, 선박, 요금 및 재정적 의무부담 계획 등 협약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협약체결 전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및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협약 체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제47조>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제4조(협약체결)

-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나. 검토의견

1) 현황

- 한강버스 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사업의 하나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이에 따른 교통 체증 문제 해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한강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SH공사가 사업자로 참여(‘23.11)한 이래 시의회 동의(‘23.12.22) 후 협약체결(‘23.12.28), 관련 조례 제정(‘23.12.29), (주)한강버스 법인 설립(‘24.6.26)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사업자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약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주요 협약 변경 내용은 사업명·사업자, 호선별 선박(12척) 계획, 노선 및 요금 확정, 일정 비율의 이윤 반영, 부대시설의 사용기한 명시, 환승할인 교통체계 반영(기후동행카드 등) 등임.

<주요 협약 변경 사항>

조항	당초(안)	변경(안)
사업명	한강 리버버스	한강버스
사업자	(주)이크루즈	(주)한강버스
제3조	· 전기충전시설 내용 없음	· 도선장 내 전기충시설 반영
제4조	· 선박에 대한 개괄적 내용 · 시범운항 관련 조항 없음	· 12척 호선별 선박 계획 · 시범운항 내용 반영
제8조	· 운항노선의 개괄적 내용	· 선착장 및 급행·일반 노선 구체화
제10조	· 요금의 개괄적 내용(1회 3천원)	· 연령별 요금체계 구체화 · 환승할인 및 기후동행카드 적용
제12조	· 부대사업을 기부채납하고 사용	· 20년간 무상사용으로 명시
제13조	· 보조금 차감 내용 없음	· 보조금 차감 가능 명시
별지1	· 수선충당금, 기반시설구축비 이윤 미적용	· 대수선을 위한 적립형 수선충당금 추가 · 일정비율 이윤 적용(위원회에서 결정) · 기반시설 구축비 반영

2) 검토의견

- 본 협약 변경 동의안은 ‘서울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1)’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와 (주)한강버스 간의 협의를 통해 시범 운항 전 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주요 내용 중 사업명은 시민공모를 통해 변경된 것이고 사업자 변경((주)이크루즈 →(주)한강버스)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며, 안 제4조·제8조·제10조는 친환경 선박과 시범운영 계획 및 운행 노선의 구체화와 함께 기후동행카드·환승할인 적용 등 현행 교통체계를 반영하는 것임.

안 제12조는 부대시설의 무상 사용기한을 20년으로 한정하는 등 사업 종료 기간을 명시한 것이며, 별지1의 수선충당금 적립은 선박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다만, 별지 1에서 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 외 일정 비율의 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사업 시행 초반에 발생할 수 있는 적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이윤²⁾ 인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바, 이익 보존 조치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운영 기간에 따라 이윤 비율을 다르게 하거나 종료 기간을 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간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선충당금 적립의 주 사유인 배터리는 선박 운영의 안전성 및 경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교체 주기와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차감하는 내용을 신규 반영 (안 제13조제3항)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1)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1개월간 용역을 진행하여 선착장, 노선, 이용요금, 배차간격, 대기 시설 및 편의시설 계획, 홍보 및 안내계획 확정

2) 이윤: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총지출금의 일정비율로 정하되, 적용 비율은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변경 동의안 별지 1)

판단되지만, 보조금 차감 규정이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업무협약서에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2척을 2월 말에 한강에 입항시킨 후 시범 운항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운항에 필요한 도선면허³⁾ 발급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음.

서울시가 2007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이용률 저조 등의 사유로 운영이 종료된 한강 수상택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도선면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면허